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72

발의연월일: 2022. 7. 21.

발 의 자:김정호·김병욱·김윤덕

박상혁 • 서동용 • 신정훈

신현영 · 어기구 · 위성곤

윤준병 • 윤후덕 • 임종성

정춘숙 · 허종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,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 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.

연이은 FTA 체결과 RCEP, 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바, 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진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업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함으로, 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폐업 농가의 인수 및 합병을 원활하게 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 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..

이에, 현행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 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5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2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	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
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	소득세의 감면) ①
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	
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	
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	
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	
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	
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양도함	<u>2027년 12월 31일</u>
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	
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	
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	
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	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	
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	
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	
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	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	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	
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	
감면한다.	<u>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